아들네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

목 차

제 1조 계약 기간 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2조 이용계약 목적

제 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 4조 계약의 해지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 6조 이용료 미납 관리 및 비용 변경

제 1조【계약 기간 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 2조【이용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별표첨부)**

제 6조【이용료 미납 관리 및 비용 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2026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
증가액	206,500 원	247,800 원	42,500 원	39,100 원	31,900 원	18,920 원

등급		2025년 수가	2026년 수가
3시간미만	1등급	32,520 원	33,460 원
	2등급	30,100 원	30,980 원
	3등급	27,790 원	28,590 원
	4등급	26,530 원	27,300 원
	5등급	25,260 원	25,990 원
	인지지원등급	25,260 원	25,990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0,650 원	41,820 원
	2등급	37,630 원	38,720 원
	3등급	34,740 원	35,740 원
	4등급	33,160 원	34,120 원
	5등급	31,580 원	32,490 원
	인지지원등급	31,580 원	32,49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4,490 원	56,060 원
	2등급	50,470 원	51,930 원
	3등급	46,590 원	47,940 원
	4등급	45,000 원	46,300 원
	5등급	43,400 원	44,650 원
	인지지원등급	43,400 원	44,65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7,770 원	69,730 원
	2등급	62,780 원	64,590 원
	3등급	57,960 원	59,640 원
	4등급	56,380 원	58,010 원
	5등급	54,780 원	56,360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56,360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4,660 원	76,820 원
	2등급	69,160 원	71,160 원
	3등급	63,900 원	65,750 원

○ **본인 부담률**

수급자격	일반	기초	감경(9 %)	감경(6 %)	의료(6 %)
본인부담률	**15 %**	**0 %**	**9 %**	**6 %**	**6 %**

○ **비급여**

식비	간식비
3200*2식	1일 600원